

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74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9. 1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재정법」과 달리 제한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 삭제(현행 제5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-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

6.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15년 8월 5일 ~ 8월 14일(10일간)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부서협의 기간 : 2015년 8월 5일 ~ 8월 14일(10일간)

나. 협의내용 : 의견없음

9. 기타 참고사항

- 2015 조례 규제개선 권고 관련공문(규제개혁추진단-478, 2015.2.11.)
- 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자원순환과 환경시설팀

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부서명	친환경재생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친환경재생과장 운영근
	팀장 직위·성명	환경시설운영팀장 문용석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문용석 (790-5271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예산의 이월) 특별회계의 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	<삭 제>

《 관계법령 발췌서 》

지방재정법

[시행 2015.5.13.] [법률 제13283호, 2015.5.13., 일부개정]

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.

[전문개정 2011.8.4.]